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

- 1.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관련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이 일부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5호, 2020. 9. 15.)되어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2020. 9. 2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.
 -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 병관리청장(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

수신자 질병관리청장(위기대응총괄과장), 질병관리청장(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)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감염학회,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보건사무관 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전**결 2020. 9. 15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4245 (2020. 9. 15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 복지부 보험급여과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je0925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